

가입시 알아두실 사항

- 1. 청약 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**
보험계약 청약시에는 보험상품명, 보험기간, 보험료, 보험료납입기간, 피보험자(보험대상자)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, 보험계약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수령·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.
- 2.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**
청약서는 보험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보험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(보험대상자)가 반드시 자필로 서명 또는 날인(도장을 찍음)을 하여야 합니다.
- 3.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손해**
보험계약자, 피보험자(보험대상자)의 고의 등
※ 기타 세부담보별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- 4. 가입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**
계약자, 피보험자 또는 대리인은 청약서상 질문사항(고지사항)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. 만일 허위 또는 부실하게 알렸을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상이 되지 않음은 물론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.
- 5. 가입자의 계약 후 알릴 의무**
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(보험대상자)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(보험가입증서)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.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사고 시 보상이되지 않으며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.
- 6. 청약의 철회**
가계성보험에 한하여 계약자는 계약을 청약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 드립니다.
- 7. 품질보증제도**
보험계약 청약 시 약관과 계약자보관용 청약서(청약서부본)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계약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해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정기예금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.
- 8. 보험계약 해지 시**
계약자의 보험계약 해지 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중 계약자 보험료부담비율을 곱한 금액을 환급(미납보험료 차감 후 지급)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고 보장기간 종료시에는 환급금이 없습니다.
- 9. 계약해지 후 다른보험 계약시 유의사항**
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,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10. 보험 분쟁 조정**
가입하신 보험에 민원이 있을 때에는 먼저 가입하신 농협 또는 NH농협손해보험(☎1644-8900/인터넷 www.nhfire.co.kr▶전자민원청구)으로 연락주시기 바라며,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금융감독원(☎국번없이 1332/인터넷 www.fss.or.kr)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- 11. 예금자보호 안내**
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,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(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)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"최고 5천만원"이며,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. 단,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.

안내사항

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팀 | Tel. 044)201-1797 | Fax. 044)868-0186
NH농협손해보험 | Tel. 1644-8900 | Fax. 02)3786-7660

홈페이지 <http://www.mafra.go.kr>
<http://www.nhfire.co.kr> » 보험상품 » 농작물재해보험

농작물 재해보험



대상품목
및
가입지역

농업용 시설물(단동·연동하우스, 유리온실) 및 부대시설 → 전국
시설작물9종(수박, 딸기, 토마토, 오이, 참외, 풋고추, 호박, 국화, 장미) → 전국
시설작물5종(멜론, 파프리카, 상추, 부추, 시금치) → 70개 시군

가입기간

2013. 10. 1 ~ 12. 6

보상재해

자연재해, 조수해, 화재(특약)

정부지원을
50%



상품안내



보험목적물

| 구분 | 종류 | 가입지역 |
|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|
| 농업용 시설물 및 부대시설 | 단동·연동하우스, 유리(경질판)온실, 부대시설 ※부대시설은 관수시설, 양액재배시설, 보온시설, 난방시설임 | 전국 |
| 시설작물 | 수박, 딸기, 토마토, 오이, 참외, 풋고추, 호박, '장미, 국화 멜론, 파프리카, 부추, 상추, 시금치(13년 추가) | 전국 70개시군 |

· 70개시군 : 춘천, 홍천, 철원, 평창, 횡성, 고양, 평택, 파주, 광주(경기), 포천, 이천, 남양주, 양평, 하남, 용인, 구리, 광명, 수원, 청원, 진천, 청주, 충주, 부여, 논산, 공주, 당진, 태안, 예산, 천안, 청양, 고창, 전주, 완주, 남원, 장수, 김제, 나주, 담양, 순천, 영암, 보성, 광양, 곡성, 화순, 고령, 상주, 성주, 예천, 군위, 칠곡, 김천, 안동, 포항, 경주, 영덕, 구미, 함안, 의령, 창원, 밀양, 진주, 김해, 산청, 하동, 합천, 창녕, 대구(북구), 부산(강서구), 광주(광산구, 남구)

※ 농업용시설물 보험가입 후 부대시설, 시설작물 가입가능. 단, 유리(경질판)온실은 제외.

가입내용

| 구분 | 내용 |
|------|---|
| 가입면적 | 단동 : 1,000㎡이상, 연동 : 400㎡이상, 유리온실 : 제한없음 |
| 특약 | 재조달가액보장, 화재위험보장, 수재위험부보장 |
| 가입단위 | 1단지 ※보험가입금액 설정 및 손해평가는 하우스 1동 단위로 함 |
| 보험료 | 보험료 = 보험가입금액 X 보험요율 ※정부에서 50% 지원, 지방자치단체 별도 지원 |
| 보험기간 | 1년 ※춘치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는 단기계약 가능 |
| 납입방법 | 일시납 |
| 가입기간 | 2013. 10. 1(화) ~ 12. 6(금) |

※ 정부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습니다.
※ 보험요율은 지역에 따라 다르며, 가까운 지역(품목)농협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보장내용

| 구분 | 농업용시설물 및 부대시설 | 시설작물 |
|--------|--|---|
| 보상재해 | 자연재해, 조수해, 화재(특약가입 시 보장) | |
| 보상내용 | 손해액을 산출한 후 자기부담금을 차감한 금액을 보상함 $\text{보험금} = (\text{손해액} - \text{자기부담금}) \times (\text{보험가입금액} \div \text{보험가액})$ ※자기부담금은 30만원 또는 보험가액의 10%중 작은 금액(1동 단위) | 손해액이 소손해면책금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고발생시점까지 작물을 재배하기 위해 투입된 생산비를 피해율에 따라 보상 $\text{보험금} = (\text{작기별보험가액} - \text{사고발생작기에서 기발생보험금합계}) \times \text{경과비율} \times \text{피해율}$ ※경과비율: 정식일(시금치는 파종일)또는 수확개시일부터 사고발생시점까지 경과일수 비율 |
| 예시 | 보험가액이 500만원, 보험가입금액이 400만원인 비닐하우스에 돌풍으로 200만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면, $\begin{aligned} \text{보험금} &= (200\text{만원} - 30\text{만원}) \\ &\times (400\text{만원}/500\text{만원}) \\ &= 136\text{만원} \end{aligned}$ | 오이(보험가액200만원)와 토마토(보험가액300만원)를 가입하고, 보험가입금액이 500만원인 경우, 오이에 80%피해가 발생하고 경과비율이 90%라면, $\begin{aligned} \text{보험금} &= 200\text{만원} \times 90\% \times 80\% \\ &= 144\text{만원} \end{aligned}$ |
| 보험금 지급 | 청구서류를 접수하면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 지급 | |

피해발생시 조치사항

계약자는 보험의 목적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농협으로 통지 → 농협은 NH농협손해보험으로 해당사실을 통보 → NH농협손해보험은 손해평가 실시